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김 경 환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1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함)은 소규모 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을 과제로, 가칭 UNCITRAL Limited Liability Organization(UN유한책임조직, 이하 ‘UNLLO’라 함)을 위한 입법지침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35차례 회의를 하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35차 회의는 2021. 1. 25.부터 29.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이탈리아 출신 Maria Chiara Malaguti 의장의 주재 하에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2. 회의 결과 요지

제35차 회의는 UNLLO에 대한 입법지침 최종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동 지침 초안(A/CN.9/WG.I/WP.122, 이하 ‘입법지침 초안’이라 함)에 대하여 권고안(Recommendation) 32개를 포함하여 개별 문단을 차례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회의를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제35차 회의에서는 입법지침 초안의 내용을 미세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작업반은 표준 정관(UNLLO Model Organization Rules)을 제외한 UNLLO 입법지침 초안을 2021년 제43차 위원회(Commission) 전체회의에 최종화 및 채택을 위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준 정관의 경우 작업반은 사무국에 표준 정관 초안 정비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작업반의 다음 주제인 소규모기업에 대

한 신용공여(Access to Credit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II. 제35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1. UNLLO 명칭 관련

임시 명칭인 UNLLO를 대신할 명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UN, UNCITRAL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가 LLO(Limited Liability Organization)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주장하였으나 LLE(Limited Liability Entity)가 상업적 목적의 기구에는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명칭은 차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제5문단, 제29문단 관련(입법지침과 과세정책과의 관계)

제5문단과 제29문단은 모두 입법지침이 각국의 과세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29문단을 삭제하자는 일부 국가의 주장이 있었으나, 과세 정책이 법인격 유무와 긴밀

히 연결되는 법제도 존재하므로 UNLLO의 법인격에 관한 입법지침 제3조의 해설인 제29문단에서도 입법지침과 과세정책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국가의 반대가 있어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제17문단 관련(강행규정)

제17문단은 입법지침 초안의 어떤 권고안들이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인지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목록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각 조문의 규정 사항을 사원들이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각 조문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경우(unless otherwise agreed)”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목록은 만들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mandatory provision’은 사원들이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회원국으로 하여금 입법 시 입법지침과 달리 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 지침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입법지침 전반에서 ‘mandatory provision’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제18문단 - 가중 다수결 (Qualified Majority) 관련

가중 다수결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각국의 입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각국이 정하더라도 가중 다수결의 요건은 일반 다수결(majority)보다는 강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인 문구 작성은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5. 제18문단 - 정관(Organization Rules) 관련

정관의 정의를 사원들이 합의한 규칙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기본 규정(default rule)이나 강행규정도 포함하는 의미로 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정관은 그 정체성 자체가 사원들이 합의로 정한 조직의 규칙이고 입법지침 제12조, 제13조 역시 정관은 사원들의 만장일치로 도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정의는 정관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국 등의 반대가 있어 위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6. 권고안 제3조 및 제27~29문단 (UNLLO의 법인격)

권고안 제3조는 UNLLO가 사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 규정이 본 입법지침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각국이 이탈해서는 안 되는 ‘mandatory provision’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지침의 성격상 ‘mandatory’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안으로 제3조는 UNLLO 법리에 ‘essential’하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문들 사이에 서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28문단에 “Providing for the separation of UNLLO assets from the personal assets of its members through legal personality and limited liability protection (see rec.4) is fundamental to the structure of the UNLLO.”와 같은 문장을 삽입하자는 2차 대안이 제시되어 채택되었다.

11. 권고안 제4조 및 제30~36문단(사원의 유한책임)

제34문단, 제48문단은 UNLLO의 설립 전에 설립자들이 UNLLO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UNLLO가 승계하는지 여부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정관이 아니라 각국의 법에 따라 정해질 내용이므로 이에 맞추어 각 문단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12. 권고안 제7조 및 제44~47문단 (사원의 자격)

권고안 제7조 제b항은 자연인 외에 법인도 UNLLO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할지는 각국이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Specify whether an UNLLO may only have natural persons as members and if not, the extent to which legal persons are permitted.”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한편 위 문구 중 “the extent to which legal persons are permitted”의 뜻이 각국으로 하여금 법인이 경영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을 해설에서 언급하기로 하였다.

13. 권고안 제11조 및 제66~68문단 (사원의 권한 배분)

권고안 제11조는 사원의 권한 배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속된 제68문단은 사원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제68문단은 “사원들이 UNLLO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나눠서 책임을 진다 (share in the losses of the UNLLO through, for example, receiving no distributions)”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원들은 유한책임만을 지므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성격상 어울리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경영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위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14. 권고안 제13조 및 제73~74문단 (UNLLO의 의사결정 방식 - 만장일치 및 다수결)

권고안 제13조 제a항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원들에게 결정이 유보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unless the law provides for a qualified majority)” 만장일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옴표 안의 부분에 대하여 만장일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고 해당 내용이 제74문단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15. 권고안 제17조 및 제84~85문단 (업무집행자의 책임 및 의사결정 방식)

권고안 제17조 제a항은 업무집행자들이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해 직원들에게 유보된 사항이 아닌 UNLLO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의 “pursuant to this law or the organization rules”가 ‘either one or the other’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pursuant to this law and, where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rules”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16. 권고안 제18조 및 제86~88문단 (업무집행자의 자격)

권고안 제18조는 이번 초안에서 추가되었다. 권고안 제18조는 “UNLLO의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집행자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The law should provide that persons who manage the UNLLO shall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ose in a management position).”고 정한다.

17. 권고안 제19조 및 제89~91문단 (업무집행자의 대표권 및 대표권의 제한)

권고안 제19조는 업무집행자는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UNLLO를 대표할 수 있고, 대표권의 제한은 적절한 통지(proper notice)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표권 제한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관련하여 통지(notice)보다 인지(knowledge)의 개념이 더 중요하므로 통지를 인지로 변경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현재의 규정은 기존 합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이 지적되었고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제91문단 마지막 문장 말미에 ‘통지’가 ‘인지’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18. 권고안 제22조 및 제103~104문단(배당)

제103문단은 직원들 간 권한을 동등하지 않게 배분하는 경우 배당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어야 한다(should be equally adjusted)”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안 제22조는 “직원들이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배당에 관하여 각자의 권한에 비례하여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의미에 맞도록 위 부분을 “must be adjusted accordingly”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19. 권고안 제23조 및 제105~107 문단(배당의 제한)

권고안 제23조는 UNLLO가 배당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07문단은 “각국으로 하여금 어느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도록 한다 (leaves it open for States to opt for either one of the standards listed)”고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권고안의 취지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사무국에 제107문단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20. 권고안 제26조 및 제118~126 문단(탈퇴)

권고안 제26조 제b항은 “탈퇴한 사원은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organization rules) 적절한 시간 내에 그의 권한의 정당한 가치를 지불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항의 취지는 권한에 대한 정당한 가치 지불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문언은 권한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수정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문구 작성은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제121문단 마지막 줄은 “탈퇴 시점에 사원의 의사 결정 권리는 소멸한다(At the moment of withdrawal,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that member should cease)”고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탈퇴 시점에 권고안 제26조 제b항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제외한 사원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고 정하거나, 그것이 다른 법제와 충돌된다면 좀 더 중립적인 서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작업반은 위 문장을 탈퇴 시 권리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제126문단 마지막 줄은 “추방된 사원도 그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In case of expulsion, the expelled member may also be paid the fair value of their rights in the UNLLO over a reasonable period of time)”고 정하고 있다. 추방된 사원도 정산 받을 권리는 있으므로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21. 소제목 “K. Dissolution” 관련

해당 항목의 소제목은 원래 “Dissolution and winding-up”이었는데 일부 법제에서는 Dissolution이 Winding-up 이후 과정임을 고려하여 소제목을 “Dissolution”으로 바꾸

기로 하였고, 이 같이 용어가 정리된 경위에 관한 각주 108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2. 권고안 제28조 및 제130~135 문단(해산)

권고안 제28조 제a항 ii호는 사원들의 “만장일치 결정(unanimous decision)”을 해산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원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의사결정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권고안 제12조 및 제13조와 정합적이지 않으므로 “unanimous”를 삭제하고, 구성원은 권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산의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설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해산을 ‘dissolution’으로, 청산을 ‘liquidation’으로 번역하는데 제131문단 세 번째 줄의 “liquidation”은 해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우리측은 “dissolution”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3. 권고안 제32조 및 제141~145 문단(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권고안 제32조는 UNLLO의 사원 간, 사원과 업무집행자 간, 사원과 UNLLO 간의 분쟁에 있어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

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정하고 있다. 권고안 제32조가 대상으로 하는 분쟁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기 위하여 권고안 제32조를 UNLLO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사용을 촉진(“The law should facilitate the submission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f any dispute concerning the governance and operation of the UNLLO.”)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III. 평가 및 소감

UNLLO 입법지침에 대한 논의는 당초 제34차 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제35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제35차 회의에서는 UNLLO 입법지침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데 대다수 회원국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는 별개로 소소한 자구 수정에 대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기합의된 쟁점마저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이번이 COVID-19 사태 발생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제1실무작업반 화상 회의였음에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지연이 여전히 적지 않아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었다.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UNLLO 입법지침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할지 여부에 관하

여서도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의 대면 회의를 통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었다.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화상 회의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화상 회의를 통한 결과물의 채택 가부에 대한 합의도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대표단의 경우 기합의된 사항에 대한 재논의는 자제하되, 합의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입법지침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법제와 충돌이 없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권고안 제26조에 부속된 제121문단은 사원이 탈퇴한 경우 소멸되는 권한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decision-making rights)만이 탈퇴 시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법제와

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이에 대표단은 탈퇴 시 소멸하는 권한에 관한 내용은 각국의 법이 달리 정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위 문단의 내용을 수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UNLLO 입법지침은 아직 소규모기업에 유한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낮은 국가들이 관련 입법을 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NLLO와 법인격, 사원의 유한책임, 높은 수준의 구성원 자치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유한책임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입법지침의 세부적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국내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입법지침이 채택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해야 할 유인은 적다고 판단된다.